

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지침

2011. 3. 1. 제정

2024. 5. 1. 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특례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자 범위) 특례조치 대상자는 특례조치 시행일 현재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에서 정한 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영구수료자로 한다. 단, 어학시험 또는 전공시험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제출시까지 반드시 합격하여야 한다

제3조(특례제외자의 범위)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학칙 및 학사내규 등의 위반으로 징계중인 자

제4조(특례신청) 특례신청은 매학기 시작 전에 하도록 하되, 1회에 한한다. 특례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구비서류) 특례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 재입학청원서(서식 1호) 1부
2. 성적증명서 1부

제6조(재학연한 및 학위논문제출 기한) 재학연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신청자의 재학연한 및 학위논문제출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2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3년 이내
3. 단, 1학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

제7조(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특례신청 학기에는 재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특례신청 학기에는 재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특례허가 및 취소) ① 특례재입학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례가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례자는 휴학할 수 없다.

③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허가를 취소한다.

제9조(학적관리) 재학연한 특례조치 신청자에 대하여 그 사항을 학적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록·관리한다.

0000학년도 0학기 재학연한 특례신청자

제10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을 준용한다

부칙(2010.10.26)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5. 1.)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 유	학과장

결 재	담 당	팀 장	부원장	원 장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 재입학 청원서

과 정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학 과		전 공	
성 명		학 번	
입학년도	년 전·후 반기	최종취득학점	
주 소			
연락처(집)		Mobile	
직 장 명		직장전화	
지도교수		종합시험 합격여부 (O, X)	어학
			전공

위와 같이 청원하오니 재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재입학 청원은 1회에 한하며, 특례재입학 후에는 휴학할 수 없음

(석사 재학연한: 특례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박사 재학연한: 특례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특례재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금 및 연구등록금 납부 필수, 학위취득시까지 매 학기 연구등록 신청 및 연구등록금 납부 필수

※ 특례재입학 신청 후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허가를 취소함

년 월 일

*첨부서류: 성적증명서 1부

신청자 : (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 재입학 허가서

위와 같이 재학연한(학위논문제출시한)초과자에 대한 특례 재입학 청원을 허가함.

년 월 일(접수일)

담당자 : (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절차:①신청서작성→②성적증명서발급(자동발급기)→③학과장확인(경유)→④신청서접수(대학원)→⑤등록금고지
서출력(포탈)→⑥등록금납부(우리은행)